

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오승철 의원

제출일 : 2022. 11. 21.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하남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[별표 1]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2022년도 공무원보수인상율(1.4% 이내)에 맞추어 반영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[별표 1]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지급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

- 2023년 월정수당은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(1.4%) 반영한 월 2,548,180원으로, 2024~2026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 1/2 반영
 - 월 2,513,000원에서 월2,548,180원으로 변경

3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공문[정책기획관-19304(2022.11.11.호)]이 통보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